

지 방 교 육 행 정 재 정 투 자 사 업
심 사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연 월 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 이유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학교 설립,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 신설,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등을 위해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을 축소하여 교육감의 투자심사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투자심사 제외사유 확대(안 제3조제1항)

교육감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규모학교 및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학교를 이전 신설, 학교 통폐합을 통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나.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학교설립의 자율성 확대(안 제3조제2항)

교육감이 공공 및 민간 자본 또는 외국 자본을 통한 학교 설립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계획성있는 학교 설립을 유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신규투자사업”을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1) 내지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공립학교 및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학교복합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 2) 공립학교 및 공립 통합·운영학교를 이전하는 경우
- 3)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2호다목1) 중 “공립학교 신설·이전 사업”을 “공립학교 신설 사업”으로 하고,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 사업 및 같은 호 마목의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 사업”을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 사업. 다만, 공립학교 및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학교복합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공립 통합·운영학교 중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규모학교 설립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4호 중 “민간자본”을 “공공 및 민간자본”으로 하고,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은 제외한
다.”를 “다만, 공공 및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으로 「초·중등교육법」 제
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공립 통합·운영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
다.”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
설 사업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2. 공립학교 및 공립 통합·운영학교의 이전하는 경우
3.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하는 경우
4. 제3조제1항제2조다목1) 단서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중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중앙의뢰심사	2. (현행과 같음)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u>신규투자사업</u>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u>신규투자사업</u>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신설)	1) <u>공립학교 및 공립 통합·운영 학교 신설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학교복합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u>
2) (신설)	2) <u>공립학교 및 공립 통합·운영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u>
3) (신설)	3) <u>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u>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포함하려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제5호나목의 공립학교 신설·이전 사업, 같은 호 다목의 개발지구 내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 사업 및 같은 호 마목의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사업

1)-----

-----신설 사업-----
-----통합·운영학교 신설 사업. 다만, 공립학교 및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학교복합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공립 통합·운영학교 중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규모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4.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의3. (신설)

③ (신설)

1.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비 전액이 공공 및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다만, 공공 및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공립 통합·운영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의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의3.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2호 사업 중 국가계획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를 통해 재정투자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 사업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동

<u>2. (신 설)</u> <u>3. (신 설)</u> <u>4. (신 설)</u>	<u>시에 설치하는 경우</u> <u>2. 공립학교 및 공립 통합·운영학 교를 이전하는 경우</u> <u>3.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 ·개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u> <u>4. 제3조제1항제2조다목1) 단서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공립 통합·운영학교를 교 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설 립하는 경우</u>
--	---